

5.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8
----------	-----

제출년월일 : 2003. 9.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함.
(안 제3조제4항, 제5항)

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해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함.(안 별표 1)

라.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cm에서 4cm로 변경함.(안 별표 2)

마.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함.(안 별표 2)

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별표 1, 2)

○ 사리도 → 비포장도로

3. 개정근거

○ 관계법령 : 도로법(제3조, 제78조), 도로법시행령(제1조의3),
지방세법(제27조, 제28조)

○ 관련지침 : 서울시 도로58717-1409(2003.6.23)호에 의한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통보”

4. 예산 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를 별첨과 같이 하며,

제2호의 간접손케영향구간 차도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하고, 간접손케영향구간 보도중 “0.6m”를 “0.4m”로 하며, 복구비용(간접) 차도중 “5cm”를 “두께 5cm”로 하고, 제3호 가목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간접복구미부과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 구간의 표층시공비용을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케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상 정비하는 경우

라.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 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케에 대하여 복구

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2]를 별첨과 같이 하고,

보도의 일반보도블록 및 소형고압블록의 적용단면중 “모래:3cm”를 “모래:4cm”로 하며, 보도의 적용 단면중 “의한다”를 “준한다”로 하고, 종별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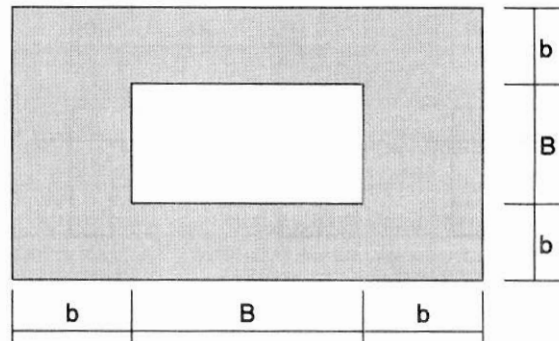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계영향 구간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컷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트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컷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 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물 위한 굴착 2.25m'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간접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 (두께 5cm)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3. 굴착폭(B), 간접손케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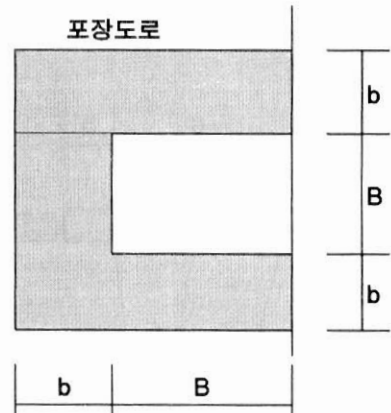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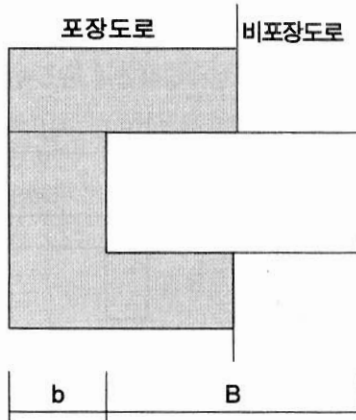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손케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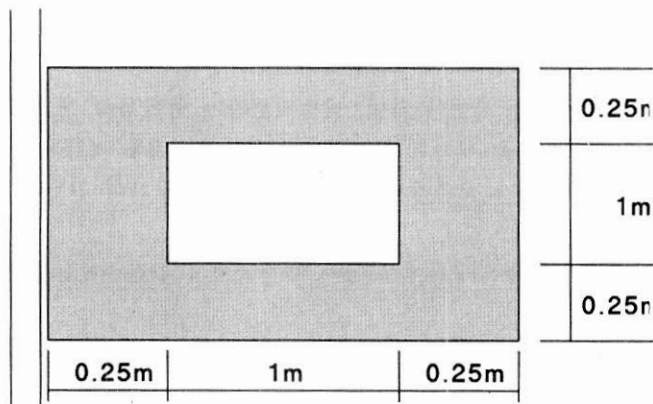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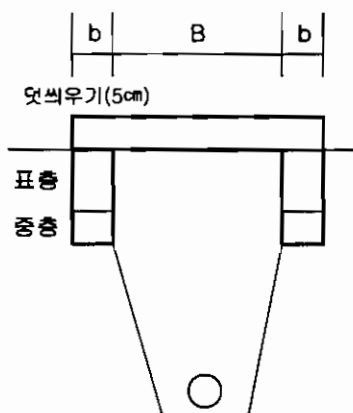
차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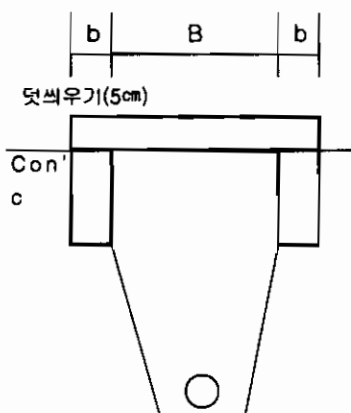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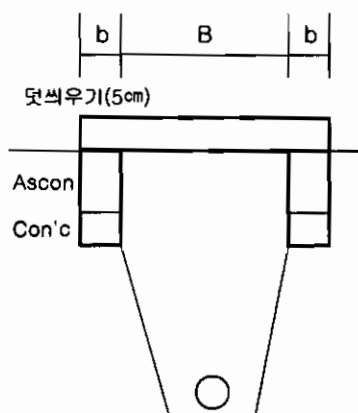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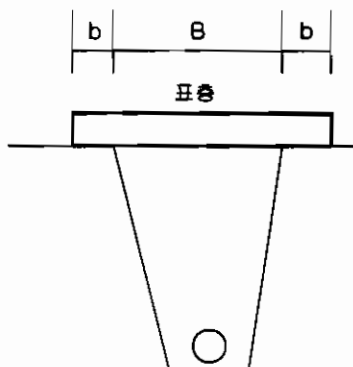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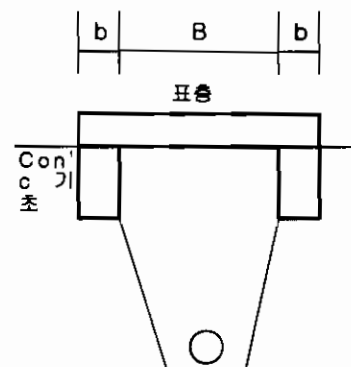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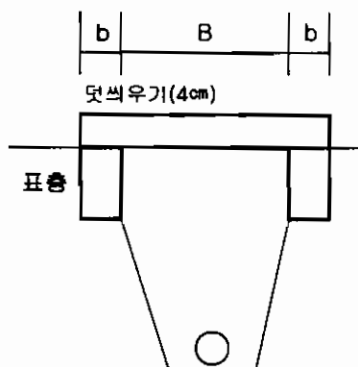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케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상 정비하는 경우

라.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 층 : 5cm	폭 20미터이상 도로	
		중 층 : 15cm		
		기 층 : 20cm		
		보 조 기 층 : 40cm		
	A - 2	표 층 : 5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중 층 : 7.5cm		
기 층 : 20cm				
보 조 기 층 : 30cm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 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보 조 기 층 : 20cm		
	C - 2	표 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조 기 층 : 15cm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 - 1	표 층 (아 스 콘) : 5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표 층 (콘크리트) : 20cm		
		보 조 기 층 : 20cm		
	CA - 2	표 층 (아 스 콘) : 5cm	폭 6m미만 도로	
		표 층 (콘크리트) : 15cm		
		보 조 기 층 : 15cm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모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7cm		
		모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 표층 : 4.5cm		
		물 탈 (1:3) : 3cm		
		콘크리트기초 : 5cm		
		보 조 기 층 : 10cm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기 층 : 10cm				
모 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장 도로		서울특별시종로구가 유지 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로 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 비고 :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 공급시설 및 전기,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